

「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20호

「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의 제안 이유는

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과 겨울철에 폭염과 한파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고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어, 계절성 재난인 폭염 및 한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
이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폭염과 한파를 재난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, 한파에 대해서도 폭염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, 계절성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고

자 함입니다.

□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
첫 번째로는 ‘한파’의 정의를 신설하여, 「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」과의 용어 정합성과 조례 내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.

두 번째로는 시장의 책무 조항에 한파 대응을 명시함으로써, 시장이 계절성 재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.

세 번째로는, 폭염과 동일하게 한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이를 기반으로 한파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으며, 이를 통해 한파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
가장 주요한 내용으로는, 재난도우미 운영 시 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고, 이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및 시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, 계층별 맞춤형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를 헤아려주시고,
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